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송재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846

발의연월일: 2021. 7. 30.

발 의 자: 송재호·김민철·소병훈

민형배 · 김영배 · 정청래

이성만 • 류호정 • 김승남

윤관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자전거이용시설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도로관리청이 정비하도록 하고, 국가는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.

그러나 현재에도 자전거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도로가 많아 이 경우 자전거는 차도 오른쪽에서 통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, 이는 대형차량과의 충돌 위험 등 자전거 운전자를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음.

이에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서 자전거가 통행할 때 특별히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하여 조사하고, 해당 지역의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한 정비·개선에 관한 사항을 활

성화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, 보다 안전한 자전거 운행 환경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5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등)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서 자전거가 통행할때 특별히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하여 조사하고, 해당 지역의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한 정비·개선에 관한 사항을 활성화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u><신 설></u>	개 정 안 제5조의2(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에 대한 조사 등)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5 조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내 에서 자전거가 통행할 때 특별 히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하여 조사하고, 해당 지역의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·개선에
	관한 사항을 활성화계획에 반 영하여야 한다.